

의안번호	제 446 호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상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5월 29일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5월 29일

발의자 : 박상돈, 최경천, 박형용,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,
이상정

1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개정(자활기관 명칭 변경)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8조제1항)
 - “중앙자활센터” → “한국자활복지개발원”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 (안 제14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48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영” 을 “ “영” 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법” 을 “ “법” ” 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” 을 “변경할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후단 중 “중앙자활센터” 를 “한국자활복지개발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단” 을 “다만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” 를 “대여기간 내에도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” 를 “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보험료” 를 “보험료를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“기금운용상” 을 “기금 운용상” 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 자활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”영“이라 한다)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</p> <p>2. · 3.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----- ----- “영” -----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----- ----- “법” ----- 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)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·기관·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<u>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</u>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7조(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) --- ----- ----- ----- <u>변경할 때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제8조(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)

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. 단, 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최장 6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8조(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)

① -----

한국자활복지개발원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대여기간
내에도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p>3.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<u>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3. ----- <u>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</u>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 (사회보험료 지원)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<u>보험료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 (사회보험료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험료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기금운용상</u>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기금 운용상</u> ----- -----</p>
<p>제14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<u>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5조의2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자활복지개발원” 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·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, 이사회, 회계,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의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